

2025년 정부회계 기출문제(1형 기준) 정답과 해설

36 ③

2025년부터 삭제한 규정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①항에 규정되어 있던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2024년 7월 31일 개정 시 삭제하였다.

37 ②

정부출자금은 출자액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품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 정부출자금은 원가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손상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손상을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고 규정된 것이 없다.

38 ⑤

- ①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재정운영표는 기능별로 작성하고,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필수보충정보로 보고한다.
- ② 비배분수익은 재정운영순원가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 ③ 연금비용은 이전비용이 아니라 국가운영비용이다.
- ④ 국가운영수익은 교환수익이다.
- 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①항

39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③항)

40 ①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 부담금 수입	₩30,000
(2) 국고수입	40,000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 보조금 지급	(10,000)
(2) 국고이전지출	(70,000)
(3) 지방재정교부금 지급	(10,000)
운영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u>₩(20,000)</u>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기획재정부예규 제733호)

5.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가) 국세, 부담금, 제재금의 징수 등에 따른 현금유입
- (나)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에 따른 현금유입
- (다) 연금·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금·보험수익과 관련된 현금유입
- (라)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에 따른 현금유입
- (마) 전입금, 국고수입 등 타 국가회계실체와의 이전거래에 따른 현금유입

6.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가) 보조금, 출연금, 교부금의 지급에 따른 현금유출
- (나)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
- (다) 국가의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자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현금유출
- (라) 연금·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금·보험비용과 관련된 현금유출
- (마) 이자 지급에 따른 현금유출
- (바) 전출금, 국고이전지출 등 타 국가회계실체와의 이전거래에 따른 현금유출